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01호
----------	--------

제출년월일 2024. 2.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개편에 따른 콘텐츠 재구성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선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일반시민, 전문가 대상 김포마루 제작 참여 기회 확대로 콘텐츠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 가능

2. 주요내용

- 가. 시민명예기자 임기 변경(2년 → 1년) (안 제8조)
- 나. 시민명예기자 해촉 사유 변경(3월 → 2월) (안 제9조)
 - 정당한 사유 없이 2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 해촉
- 다. 전문가, 독자투고 등 소식지 제작 원고료 지원 근거 마련 (안 별표)
- 라. 그 밖에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4. 1. 23. ~ 2. 2. (1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해당 없음

나) 경 기 도 : 정책홍보담당관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본문 중 “시민” 을 “김포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김포시민” 을 “시민”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편집위원회” 를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 및 편집위원회” 를 “위원회의” 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2년” 을 “1년” 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3월” 을 “2월”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 범위 안” 을 “예산의 범위”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매년말” 을 “매년 말”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홍보담당관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홍보담당관 이 화 미
	팀 장 직위·성명	미디어팀장 김 지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김 보 민(☎2066)

[별표]

시정소식지 원고료 지급기준

(제10조 제2항 관련)

구 분	작성자	원고료(원)	비 고
독자투고 (글, 시, 만화, 만평 등)	일반인	30,000	1건당
온라인기사	시민명예기자	50,000	
지면기사		100,000	
전문기고 (칼럼, 일러스트, 만화, 사진 등)	전문가	200,000 이하	

※ 비고

1. “전문기고”란 칼럼 만화, 일러스트, 사진 등을 말한다.
2. “전문가”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의 지급대상에 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민명예기자는 기사 1건당 최소 A4 1장 이내 (10~12 pt, 최소 800자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배부) ①소식지는 <u>시민</u>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김포시민</u>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u>의한</u> 소식지 배부는 정기구독자에 대한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5조 (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 략)</p> <p>5. <u>기타</u>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7조 (기획 · 편집위원회) ①소식지의 효율적인 편집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기획 및 <u>편집위원회</u>를 개최할 수 있다.</p> <p>②<u>기획 및 편집위원회</u> 구성인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제작과 관련된 용역업체, 명예기자, 소식지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식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p>	<p>제4조 (배부) ① ----- <u>김포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u>----- . -- ----- <u>시</u> <u>민</u> ----- ----- .</p> <p>② ----- <u>따른</u> ----- ----- ----- ----- .</p> <p>제5조 (내용)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그 밖에</u> ----- -----</p> <p>제7조 (기획 · 편집위원회) ①----- ----- --- <u>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u>----- .</p> <p>②<u>위원회의</u> ----- ----- ----- ----- ----- .</p>

제8조 (명예기자) ① ~ ⑤ (생략)

⑥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해촉) 명예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생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
3. · 4. (생략)
5. 기타 사유로 명예기자 활동이 어
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 제4호
에서 이동 2014.12.26.)

제10조 (수당 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
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일반 시민 및 명예기자가 기고 등
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
지에 게재되거나 시민 참여행사, 퀴
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한 소
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제8조 (명예기자) ① ~ ⑤ (현행과 같
음)

⑥----- 1년-----
-----.

제9조 (해촉) -----

-----.

1. (현행과 같음)
2. ----- 2월 -----

3.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

제10조 (수당 등) ① -----

----- 범위-----
---- 그 밖에 -----
-----.
-----.

②-----

----- 예산의
범위-----
-----.

있다.

제11조(실적평가 등) ① 명예기자 활동에 대한 개인별 실적평가는 연간 단위로 매년말 실시한다.

②·③ (생략)

[별표]

시정소식지 명예기자 원고료 지급기준

(제10조 제2항 관련)

구 분	대상범위	지급액(원)	비고
200자 원고지 1매당 (단, 편집분량 기준)	시민명예기자 (일반)	10,000 0	매호별 1인당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시민명예기자 (학생)	5,000	

※ 원고료는 원고매수 소수점을 절하하여 지급

제11조(실적평가 등) ① -----

----- 매년 말 -----.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시정소식지 원고료 지급기준

(제10조 제2항 관련)

구 분	작성자	원고료(원)	비 고
독자투고 (글, 시, 만화, 만평 등)	일반인	30,000	1건당
온라인기사	시민명예	50,000	
지면기사	기자	100,000	
전문기고(칼럼, 일러스트, 만화, 사진 등)	전문가	200,000 이하	

※ 비고

1. “전문기고”란 칼럼 만화, 일러스트, 사진 등을 말한다.
2. “전문가”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의 지급대상에 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민명예기자는 기사 1건당 최소 A4 1장 이내 (10~12 pt, 최소 800자 이상)로 작성하여야 한다.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명칭)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 라 한다)의 명칭은 “김포마루” 라 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 (발행) 소식지의 발행인은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 하며 월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배부) ①소식지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김포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정기구독자에 대한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8.1.4)

제5조 (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정, 도정, 시정 및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공지사항, 주요행사, 공익광고,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31.>
3. 지역 동정 및 사건, 사고 등 시민과 지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31.>
4. 양성평등, 폭력감수성, 사회통합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31.>
5. 기타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3.31.>

제6조 (제작 및 편집) 전문 기술과 체계적인 제작 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기획, 취재, 촬영, 편집, 디자인, 인쇄, 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기획·편집위원회) ①소식지의 효율적인 편집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기획 및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②기획 및 편집위원회 구성인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제작과 관련된 용역업체, 명예기자, 소식지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식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6.9.30, 2007.4.9, 2012.2.1, 2013.7.15, 2014.12.26, 2017.3.2, 2018.9.3.,2020.12.31.>

제8조 (명예기자) ①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시민명예기자과 50명 이내의 학생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1.4, 2014.12.26)

②시민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이나 신청을 통하여 문예창작에 자질이 있거나, 신문, 잡지의 기자, 원고기고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학생명예기자는 학교생활에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초·중·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12.26)

④명예기자는 소식지 제작을 위하여 취재, 기사 작성, 기획·편집회의 참석 등 제작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다.

⑤명예기자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제9조 (해촉) 명예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명예기자로써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개정 2014.12.26)
5. 기타 사유로 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 제4호에서 이동 2014.12.26)

제10조 (수당 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②일반 시민 및 명예기자가 기고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되거나 시민 참여행사,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제11조(실적평가 등) ① 명예기자 활동에 대한 개인별 실적평가는 연간 단위로 매년말 실시한다.

② 실적평가는 취재 및 기사제출 실적, 회의 참석률, 시정홍보 활동, 시정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다.

③ 평가결과 우수 활동 명예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표창 및 보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2.26]

제12조 (정보통신 활용) 시장은 시정소식지 발행 자료 및 제5조에 따른 내용을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및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별표] <개정 2019.10.28.>

시정소식지 명예기자 원고료 지급기준

(제10조 제2항 관련)

구 분	대상범위	지급액(원)	비고
200자 원고지 1매당 (단, 편집분량 기준)	시민명예기자(일반)	10,000	매호별 1인당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시민명예기자(학생)	5,000	매호별 1인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원고료는 원고매수 소수점을 절하하여 지급